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에 관한 권고

2003년 10월 15일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널리 인정된 법적수단들이 공언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온전한 이행에 헌신하고, 1966년에 채택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유념하여,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또한 동 분야 관련 유네스코 총회 의결안 및 국제연합 총회의 관련 결의안 이행에서의 유네스코의 중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이 “문화의 너른 전파와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이 인간존엄성에 필수적이고 상호 지원과 관심의 정신에서 모든 국가가 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의 일부”라고 선언함을 상기하고,

나아가 다른 목표들과 함께 “말과 이미지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협정”을 권장할 목표를 유네스코에 부여하고 있는 유네스코 헌장 제 1조를 상기하고,

유네스코 제31차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보편선언, 특히 제 5, 6, 8조에 구체화 되어 있는 원칙들을 단언하고,

다언어사용 증진 및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접근과 관련된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안들을 참조하고,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개발이 말과 이미지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향상시킬 기회를 주지만 모두의 세계정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난점을 일으키리라 확신하고,

세계의 정보네트워크의 언어다양성과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정보 접근이 현재 논의의 중심에 있으며, 지식기반 사회 발전에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보편적인 정보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을 고려하고,

정보빈곤자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교육과 문해가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인지하고,

경제개발 수준의 차이가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의 전망에 영향을 주며, 현재 불균형 상태의 교정 및 상호 신뢰와 이해의 풍토 조성을 위해 명확한 정책과 결속력 증진이 필요함을 고려

하여,

본 권고를 채택한다:

다언어 콘텐츠와 시스템의 개발

1. 현지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는 디지털 형태의 교육, 문화, 과학 콘텐츠의 창작, 처리, 접근을 장려하여 인터넷에서의 언어장벽을 완화시키고 인적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문화의 자기표현 및 토착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를 통한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회원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인터넷에서의 현지적, 토착적 콘텐츠 생산을 위한 역량강화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모국어를 포함,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언어교수를 장려하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언어생존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적절한 국가정책을 공식화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원조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전자형태의 언어교육 자료 개발을 촉진하고 동 분야의 인적자원 향상을 위해 강화, 확장되어 한다.
4. 회원국, 국제기구, 정보통신기술산업체들은 운영체제, 검색엔진, 웹브라우저 및 다언어적 역량, 온라인 사전, 용어집 등에 관한 협력적, 참여적 연구, 개발과 함께 현지상황에 맞춰 이들을 개조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아울러 저자의 번역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동번역서비스 및 다언어정보검색, 요약/발췌, 담화이해 등을 수행하는 언어지능체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5. 유네스코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언어전산화 혁신을 포함, 다언어사용, 다언어 자원, 다언어 응용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현재의 정책, 규정, 기술적 권고, 모범사례 등을 다룰 협력적 온라인 관측소를 설치해야 한다.

네트워크와 서비스로의 접근 촉진

6.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세계인권선언 제19, 27조에 정의된 인권의 실현을 장려하는 수단으로서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인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7.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시민권과 시민사회의 주체적역량강화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러한 정책의 실시와 지원을 장려함으로써 공공서비스로서의 인터넷 접근을 증진해야 한다.
8. 특히,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공공서비스 기관, 교육기관, 혜택받지 못한 집단, 신체장애

가 있는 집단의 요구를 특별히 고려하여 알맞은 원격통신·인터넷 비용으로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국지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학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부과된 세금과 관세 등 ICT 사용에 대한 재정적 장벽 완화를 장려할 공사(公私)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이 영역의 새로운 인센티브가 위와 같은 목표를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9. 회원국들은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접근을 향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처들(ISPs)이 학교, 학술기관, 박물관, 기록보관소, 공공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해 인터넷 액세스 할인요금 적용을 고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0. 회원국들은 지역사회 프로젝트 수립과 현지 정보·커뮤니케이션 지도자 및 교사 양성 등 지역사회의 정보접근성을 촉진하고 사회 전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전략 및 모델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전략은 또한 인터넷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들 간의 ICT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11. 국제협력의 정신에서 협의된 비용분담을 기초로 하여 개발도상국의 민간 및 비영리 인터넷서비스 제공처의 트래픽을 연결하는 국가적인 인터넷 피어링 지점(peering point)과 다른 개발도상국 혹은 산업선진국의 인터넷 피어링 지점 간에 상호연결이 촉진되어야 한다.

12. 지역 기구 및 포럼들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각 국가를 세계적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하는 고용량의 지역적 기간망에 의해 가동되는 지역 간 네트워크 및 지역 내 네트워크의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13. 국제연합 체제 안에서의 공동의 노력은 공개소스기술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책형성과 역량개발 등 사회경제 발전에서의 ICT 기반 네트워크와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를 장려해야 한다.

14.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다언어 도메인 명칭을 포함, 도메인 명칭 관리에서의 적절한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한다.

공공영역 콘텐츠 개발

15. 회원국들은 기밀사항, 개인정보, 국가안전, 해당 정보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대 민주사회 시민과 연관된 정보 등 공공기록과 정부기록으로의 보편적 온라인 접근권을 승인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국제기구들은 국가의 사회, 경제 상황과 관련된 필수 데이터에 접근할 각국의 권리를 인식하고 공포해야 한다.

16.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공공영역의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는 곳을 파악, 증진하고, 모든 사람이 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조성과 수용자 개발에 도움이 되는 학습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공공영역 정보의 보존과 디지털화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17.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 없이 보편적인 공공영역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 모두를 존중하는 협력적 조치들을 장려해야 한다.

18.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정보교류, 이식성, 정보처리상호운용성 및 세계 정보네트워크 공공영역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가능성 등을 위한 기술적, 방법적 표준의 형성을 포함, 오픈 액세스 솔루션을 장려해야 한다.

19. 회원국들과 국제기구들은 ICT 실천 및 사용을 대중화시키고 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등 ICT 문해를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ICT 기술훈련과 결합된 개방적이고, 차별이 없고, 문화소통적인 교육 등 정보사회를 위한 “인적자본”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ICT 훈련은 기술능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윤리적 원칙과 가치의 인식까지 포함해야 한다.

20. 개발 프로젝트와 사업을 통해 생산된 방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특히 개발도상국과 혜택 받지 못한 공동체들을 위해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식집합체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연합 체제 내에서의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1. 유네스코는 다른 관련 정부간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영역 정보의 생산 및 온라인 보급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률, 규정, 정책 일람표를 편찬해야 한다.

22. 모범사례 정의와 채택 및 자발적, 자기통제적, 전문적, 윤리적 지침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선에서 정보생산자, 사용자, 서비스 공급자 간에 장려되어야 한다.

권리소유자의 이익과 공익 간 공정한 균형의 재표명

23. 회원국들은 국제 저작권 협약 및 관련권리 협약에 명시된 저자, 저작권자, 관련 권리소유자, 대중의 이익 간의 공정한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관계된 집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저작권법을 갱신하고 이를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시켜야 한다.

24.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적합할 경우, 권리소유자 및 저작권과 관련권리 보호에 대한 제한과 예외의 적법한 수혜자들로 하여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세계지적 소유권기구 실연·음반조약(WPPT)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의 정상적인 사용과 마찰하지 않고 권리소유자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5.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기술혁신 개발과 그것이 국제조약과 협정 하에서, 또한 저작권과 관련권리 보호의 틀 안에서 정보접근에 대해 갖는 잠재적 영향력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국들에 이 권고에 제시된 규범과 원칙들이 각자의 영토와 관할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가능한 법적조치 및 기타 수단을 취하여 상기 조항들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인터넷 상의 다언어사용, 네트워크와 서비스 개발, 인터넷 상의 공공영역 정보 확장, 지적재산권 문제 등 ICT 정책, 전략, 기반시설에 관한 공적, 사적 사업을 맡은 공공사업기관 및 시설이 본 권고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한다.

총회는 총회가 결정한 일자에 총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본 권고에 효력을 주기 위해 취했던 조처에 대해 총회에 보고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한다.

부록

정의

본 권고에서:

- (a) 기간망(Backbone)은 저용량의 네트워크들을 연계하는 고용량의 네트워크이다;
- (b) 저작권 제한과 예외(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는 저작 및 관련 권리의 대상물 사용에서 저자 및 기타 권리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규 상의 조항들이다. 그러한 제한과 예외의 주요한 형태는 강제실시권, 법정실시권, 공정이용 등이 있다;
- (c)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세계 정보기반시설과 연결된 디지털 혹은 전자적 의사소통을 위한 가상세계이다;
- (d)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자원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인터넷 주소 상에 주어진 이름이다. (예를 들어, <http://www.unesco.org>의 "unesco.org");
- (e) 지적언어체계(Intelligent linguistic systems)는 신속한 컴퓨터 데이터 검색과 현대적인 컴퓨터의 조작력을 언어 안 혹은 언어 간 인간의사소통 과정 상 명확히 진술되지 않지만 함축되어 있는 뉘앙스에 대한 보다 추상적이고 미묘한 추론능력 및 이해와 결합시켜, 높은 수준의 인간의 의사소통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한다.
- (f) 인터넷서비스제공처(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 (g) 정보처리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는 서로 다른 판매처로부터 나온, 서로 다른 기계에 부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성능이다.
- (h) 공개소스기술(Open source technology)은 공개소스의 전제,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본래의 형태대로이거나 프로그램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지침)가 무료로 일반대중에게 제공될 것을 규정하는 공개소스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의 인증기준에 의거한다.
- (i) 피어링(Peering)은 2개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처(ISP)가 그들 간에 직접적인 링크를 형성하여, 인터넷기간망을 사용하는 대신 이 링크를 통해 서로의 패킷(packet)을 곧바로 전달하기로 동의한 관계를 말한다. 2개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처가 피어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의 한 제공처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은 우선 피어링지점이라 불리는 중앙교환처로 라우팅된 후 최종목적지로 전달된다.
- (j) 이식성(Portability)은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기계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함이 없이 다양한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

(k) 공공영역정보(Public domain information)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사용이 법적권리나 기밀유지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영역정보는 한편으로는 국가법이나 국제법에 의해 그 보호가 보장되지 않거나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권한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권리의 저작 및 대상물의 범위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나 국제기구에 의해 생산되고 자발적으로 입수가능하게 된 공공데이터와 공적정보를 의미한다.

(l) 검색엔진(Search engine)은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문서를 검색, 그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져오는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이다.

(m) 보편적인 사이버스페이스 접근(Universal access to cyberspace)는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알맞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정보인프라(특히 인터넷)로의 접근 및 집단적, 개인적 인적개발에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으로의 접근이다;

(n) 웹브라우저(Web browser)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페이지의 위치를 찾아내어 보여줄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이다.

2003년 채택